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제안이유

-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 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7785호, 2005. 12. 2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조정 및 추가함.(안 제11조 제1항)
-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을 “국공립보육시설”로 변경함.
(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인가? ○ 2005년도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야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 조례안 제11조의 보육시설 이용자 범위에 있어 영유아가 자녀로 바뀌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함. ○ 2005년 12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이 공포된 이후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년도에 개정 공포되는 등 절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 영유아의 개념은 6세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자녀의 개념은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21호
의결 년월일	2007. 7. 19 (제137회)

제출년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7785호, 2005. 12. 2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을 “국공립보육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시립보육시설의 설치)”를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시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시립보육시설”을 각각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영유아 3.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p>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